한남대학교 기획조정처

한남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 수렴 : 2023.11.20. ~ 11.26.

기획조정처 기획예산팀

□ 안건

안건 번호	심 의 안 건	구분	문서 번호
1	한남대학교 학칙	개정	2-1-2

안건 1	한남대학교 학칙 (개정)	2-1-2	입안 부서	교무처 학사관리팀

가. 개정사유

1) 중복되는 휴업일을 하나로 묶고 법령 명칭으로 문구 수정

2) 전공변경(전과) 명칭 수정: 『고등교육법 시행령』(관련 법령) 사용 단어와 통일

3) 전공변경(전과) 제도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반영

○ 『대학학생정원령』 폐지 :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타법폐지]
※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의2(전과등) 제한사항이 폐지됨

○ 전공변경(전과) 제한 폐지 : 전공변경 이력이 있거나 4학년 진급예정자 제한 등 폐지

○ 학생의 부적응 및 중도탈락 방지, 최소한의 구제 목적

○ 학생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이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 변경 추진

○ 타 대학 사례

대학명	전과 횟수	특이사항(전공변경 허용 인원)
KAIST	**제한없음**	**무제한**
전주대학교	**제한없음**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 4학년 전공변경 허용(편입생 포함)
순천향대학교	**제한없음**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2학기~5학기 이수자 대상 **희망자 모두 선발(원칙)**
호서대학교	**제한없음**	무제한(재입학자 포함, 2학기(편입생 1학기) 이상 대상) 유아교육과/보건계열 학과로의 전공변경 불허
배재대학교	2회	**무제한(단, 사범계열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0%)** 편입생 첫학기 이수 후 전공변경 가능
우송대학교	2회	**무제한(단, 유아교육, 보건계열 관련 법령 가능 인원 제한)**
서울여자대학교	1회	2, 3학년 매학기 전공변경 신청 학과(전공)별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 허용 (교육심리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계명대학교	1회	대상 : 등록횟수 2~4회 학생(모집중지 학과 등록횟수 2~5회) 전과 정원은 별도로 정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 · 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 · 편입학, 휴 · 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 · 자퇴 · 제적 · 유급 · 수료 · 졸업 및 징계 *(이하 생략)*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 · 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5. 3. 25., 2006. 1. 13., 2008. 2. 29., 2010. 9. 1., 2013. 3. 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이하 생략)*

[의료법] 발췌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9조(입학 · 편입학 등)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 등으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 2023.11.14.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 법제 심사 진행 중, 2023.12월 공포 예정

4) 대학교육혁신본부-8915 (2023.11.07.) 「DSC 공유대학 공동학위제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에 의거하여 공동학위 수여를 위한 근거 및 학위증 서식 추가

5) 『체육특기자 학사관리규정』(변경 전) 전면개정에 따른 학칙 특기자 명칭 변경

- (변경 후)전면개정 규정 : 『학생선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학생선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전면개정) 발췌

제2조(정의 및 자격) ① **"학생선수"**란 한남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체육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입학 후 체육부 운영위원회 추천과 교무위원회 의결로 "장학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3. 입학 후 체육부 운영위원회 추천과 교무위원회 의결로 "비 장학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선수는 학생선수 신분이어야 하며,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5조(학사관리) 학생선수의 출석 및 공결, 시험 대체, 성적 처리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교양융복합대학(2011년도 ~ 2016년도)이 학사과정 학위종별 단과대학명에 누락 되어있어 추가

나. 주요내용

1) 제10조제5호: 호 삭제(일요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됨)
2) 제10조제6호: 문구 수정(기타 법정공휴일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수정)
3) 제5장: 전공변경(전과) 단어 변경
4) 제19조의2: 전공변경(전과) 단어 변경, 관련 법령 적용(전과의 정의 및 제한 사항 등)
5) 제43조의(학위): 문구 수정(학사학위(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에서 학사학위([서식 1] 내지 [서식 4])로 수정)
6) 제43조의3(공동학위수여): 조 신설
7) 제63조(장학금): 문구 수정("특기자"에서 "학생선수"로 수정)
8) 서식 추가: [서식7] DSC 공유대학 국문학위증, [서식8] DSC 공유대학 영문학위증 (신규)
9) (별표2) 학사과정 학위종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교양융복합대학) 문구 추가

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정기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일요일 6. 기타 법정공휴일	**제10조(정기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내용 변경 호 삭제 내용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정」에 따른 공휴일	
제5장 전공배정, 전공변경(전과),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5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내용 변경
제19조의2(전공변경(전과)) ① 전공변경(전과)을 희망하는 자는 2학기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공변경(전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공변경(전과)은 그 학과로 전공변경(전과)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년, 학기(이수 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신설 학과(전공)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전공변경(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전과) ①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하 “전과”라 한다)을 희망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제목 변경 및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제43조(학위)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학사학위(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한다. 다만, 다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시기는 각 전공을 모두 이수한 때로 한다.	제43조(학위)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학사학위([서식 1] 내지 [서식 4])를 수여한다. 다만, 다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시기는 각 전공을 모두 이수한 때로 한다.	내용 변경
	제43조의3(공동학위수여) 공유대학에 선발된 학생이 공유대학 공동학위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본교와 공유대학의 총괄대학, 중심대학 명의로 학사학위([서식7], [서식8])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조 신설
제63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특기자,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교직원 직계자녀, 교육자 직계자녀, 교역자 직계자녀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	제63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학생선수,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교직원 직계자녀, 교육자 직계자녀, 교역자 직계자녀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내용 변경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비고</th></tr>
<tr><td>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td><td>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td><td></td></tr>
<tr><td></td><td>[서식 7] DSC 공유대학 국문학위증
[서식 8] DSC 공유대학 영문학위증</td><td>서식 추가
서식 추가</td></tr>
<tr><td>(별표2) 학사과정 학위종별
<table><tr><th>단과대학</th><th>학과(전공)명</th></tr><tr><td rowspan="18">탈메이지 교양·융합 대학 (탈메이지 교양교육 대학) (창업·융합대학)

(DH-SCHOOL) (창의융합 학부)</td><td>광고홍보학전공</td></tr><tr><td>금융공학전공</td></tr><tr><td>문화관광학전공</td></tr><tr><td>국제개발비즈니스학전공</td></tr><tr><td>기록관리학전공</td></tr><tr><td>중국지역학전공</td></tr><tr><td>인도지역학전공</td></tr><tr><td>베트남지역학전공</td></tr><tr><td>문화재·박물관학전공</td></tr><tr><td>다문화교육전공</td></tr><tr><td>빅데이터전공</td></tr><tr><td>한국어통·번역전공</td></tr><tr><td>사회적경제전공</td></tr><tr><td>융복합창업전공</td></tr><tr><td>금융학전공</td></tr><tr><td>코스메틱사이언스전공</td></tr><tr><td>과학기술·행정전공</td></tr><tr><td>과학기술행정전공</td></tr><tr><td>XR스마트미디어전공</td></tr></table></td><td>(별표2) 학사과정 학위종별
<table><tr><th>단과대학</th><th>학과(전공)명</th></tr><tr><td rowspan="18">탈메이지 교양·융합 대학 (탈메이지 교양교육 대학) (창업·융합대학) (교양융복합 대학) (DH-SCHOOL) (창의융합 학부)</td><td>광고홍보학전공</td></tr><tr><td>금융공학전공</td></tr><tr><td>문화관광학전공</td></tr><tr><td>국제개발비즈니스학전공</td></tr><tr><td>기록관리학전공</td></tr><tr><td>중국지역학전공</td></tr><tr><td>인도지역학전공</td></tr><tr><td>베트남지역학전공</td></tr><tr><td>문화재·박물관학전공</td></tr><tr><td>다문화교육전공</td></tr><tr><td>빅데이터전공</td></tr><tr><td>한국어통·번역전공</td></tr><tr><td>사회적경제전공</td></tr><tr><td>융복합창업전공</td></tr><tr><td>금융학전공</td></tr><tr><td>코스메틱사이언스전공</td></tr><tr><td>과학기술·행정전공</td></tr><tr><td>과학기술행정전공</td></tr><tr><td>XR스마트미디어전공</td></tr></table></td><td>내용 추가</td></tr>
<tr><td></td><td>부 칙(개정일)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d>부칙 신설</td></tr>
</table>

[서식 7] DSC 공유대학 국문학위증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참여대학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자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 공동운영된 DSC 공유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융 합 전 공: ○○전공 (공학사)

년 월 일

[총괄대학]	[중심대학]	[학생소속대학]
충남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한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학위) ○ ○ ○ (직인)	(학위) ○ ○ ○ (직인)

[참여대학]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 | 순천향대학교 SCH SOON CHUN HYANG UNIVERSITY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OREATECH

한밭대학교 HANBAT NATIONAL UNIVERSITY | 건양대학교 KY | 나사렛대학교 KOREA NAZARENE UNIVERSITY |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 대전대학교 |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 백석대학교 BAEKSEOK UNIVERSITY | 우송대학교 WOOSONG UNIVERSITY |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 한서대학교 HANSEO UNIVERSITY |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학위등록번호 : 졸업년도-DSC공유대학-발급번호

[서식 8] DSC 공유대학 영문학위증

No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HANNAM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 THE JOINT BACHELOR DEGREE PROGRAM WITH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DSC PLATFORM UNIVERSITY HEREBY CONFERS ON

영문이름
DATE OF BIRTH:[NOVEMBER 12, 1234]형식으로

THE JOINT DEGREE OF

영 문 학 위 명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S OF THE UNIVERSITIES AND THE SIGNATURES OF THEIR OFFICERS.

학위수여 일자"[NOVEMBER 12, 1234]형식으로 "

[Representative Univ.]	[Co-Representative Univ.]	[Affiliated Univ.]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President (sign)_____	President (sign)_____	President (sign)_____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DSC Platform University]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 | SCH 순천향대학교 SOON CHUN HYANG UNIVERSITY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OREATECH

한밭대학교 HANBAT NATIONAL UNIVERSITY | 건양대학교 | 나사렛대학교 KOREA NAZARENE UNIVERSITY |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 대전대학교 |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 백석대학교 BAEKSEOK UNIVERSITY | 우송대학교 WOOSONG UNIVERSITY |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 한서대학교 HANSEO UNIVERSITY |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Diploma No. 졸업년도+DSCU+발급번호

■ 참고자료

대학학생정원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타법폐지]

대학학생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및 2. 생략
3. 대학학생정원령
4. 생략

제3조 내지 제21조 생략

대학학생정원령

[시행 1996. 9. 30.] [대통령령 제15151호, 1996. 9. 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과 사범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3 · 12 · 30>
[전문개정 1981 · 2 · 28]

제2조 (학생정원) ①대학 및 사범대학의 계열별 · 학부별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대학 및 사범대학의 총 · 학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학부별 또는 학과별로 나누어 정원을 운영하거나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학과를 통합하여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9 · 11 · 18, 1991 · 2 · 1, 1995 · 12 · 14>

②대학 및 사범대학의 총 · 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학부 또는 학과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학부 또는 학과의 재적생이 전과(계열 또는 학부를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 12 · 1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퍼센트를, 학과(계열별 또는 학부별로 정원을 운영하는 대학 및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계열 또는 학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퍼센트를, 학과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를, 학과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 · 9 · 14,

1993 · 4 · 2, 1994 · 10 · 15, 1995 · 6 · 17, 1995 · 12 · 14, 1996 · 9 · 30>

1. 위탁학생
2.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4.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 된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
5.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6.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 · 어촌지역의 학생
7.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12년이상의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문개정 1988 · 2 · 1]

제2조의2 (전과등)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 및 사범대학의 총 · 학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별 입학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및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와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 한약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5 · 12 · 14]

제3조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학생 소속의 변경) 단과대학(대학의 단과대학을 말하며,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학과가 신설 · 통합 · 개편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재적생을 신설 · 통합 · 개편된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 · 9 · 30>[전문개정 1988 · 2 · 1]

제4조 (학생명단의 보고) 학교의 장은 학년도 또는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학교에 지원한 자 · 응시한 자 · 합격한 자 · 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 9 · 30]

제5조 삭제<1988 · 2 · 1>

제6조 삭제<1988 · 2 · 1>

부칙 <대통령령 제4475호, 1969. 12. 24.>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간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51호, 1996.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3항 후단 · 제2호 · 제5호 ·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참고자료

KAIST 전공변경 제도

▶ 전공변경 무제한 제도

- 횟수 제한 없음
- 시기는 일정한 시기에 신청과 취소가 모두 가능
- 졸업 마지막 학기에도 전공 변경 신청 가능

Q. 학과의 부정적인 시각은 없나요?
-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라서 반발은 없습니다.

Q. 전과취소를 요청하는 학생은 없나요?
- 일정시기에 신청과 취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Q. 4학년에 전공변경을 하면 졸업이 늦어질 텐데 졸업에 대한 기준은?
- 네, 학생에게 전과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졸업요건은 당연히 채워야 합니다.
  즉, 학생이 전공변경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학은 기회만 제공합니다.
  졸업요건 채울 때까지 학교를 다니면 됩니다.

▶ 전과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다른 학과/전공분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임

○ 전과 신청 시기 : 매학기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기간

○ 신청 절차

① 학사시스템 신청(전자신청)
② 현 소속 학과 지도교수 및 신청 학과의 지도교수의 승인
③ 현 소속 학과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및 신청 학과의 학과(부)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
④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 신청 취소)
⑤ 전과 승인

○ 전과 제한

- 전과한 학생이 최장 재학기간내에 新학과에서 요구한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때에 한함
- 전과한 학생은 전과 후 新학과에서 학사과정학생은 1학기 이상,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1년) 이상, 박사과정학생은 4학기(2년) 이상 재학하고 新학과에서 요구한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때에 한함
- 석사/박사과정 국비학생의 전과는 전과 전 소속학과 국비학생수의 10% 범위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세부 사항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과 안내 https://kaist.ac.kr/kr/html/edu/03110304.html